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62호 2020. 11. 5.(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328호)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32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예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일괄 변경

나. 정의 정비 (안 제2조)

- 상품권 정의에 선불전자지급 수단, 선불카드를 추가

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설정에 대한 단서 추가 (안 제4조)

-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필요시 단축·연장 가능

라.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실의 공개 추가 (안 제6조)

-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 공개

마.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 추가 (안 제8조)

-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

바. 환전청구 및 환전한도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1조)

- 월 최대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 조정 가능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한도 미지정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junjin020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054-650-6096)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군에”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기명 유가증권을”을 “유가증권(이하 “종이류 상품권”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모바일 상품권”이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이하 “카드형 상품권”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계약”을 “협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군수가 지정하는”을 “군수에게 등록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된”을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가맹점 지정 및 취소)”를 “(가맹점 등록 및 취소)”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중 “지정을 희망하거나”를 “등록을 희망하거나”로, “지정을 변경하고자”를 “등록을 변경하고자”로, “지정하거나”를 “등록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 신청서”를 “등록 신청서”로, “지정서를”을 “등록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계약”을 “등록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될 것
2.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3.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것

4.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것. 다만, 할인행사에는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에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5.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할 것

6.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될 것

제8조의 제목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 및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단서 중 “3천만원을”을 “1천만원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3천만원으로”를 “5천만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

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 및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예천군에</u>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수가 발행하는 예천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u>예천군에</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u>유가증권을</u>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u>유가증권</u> (이하 “종이류 상품권”이라 한다), 「 <u>전자금융거래법</u> 」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모바일 상품권”이라 한다) 및 「 <u>여신전문금융업법</u> 」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이하 “카드형 상품권”이라 한다)를 -----

2. (생략)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
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
·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
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생략)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
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7. (생략)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
간) ① (생략)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
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
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예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
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

--.

2. (현행과 같음)

3. ----- 협
약-----

-----.

4. (현행과 같음)

5. -----

----- 군수에게 등록하는
-----.

6.·7. (현행과 같음)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
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
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
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유효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
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
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
한) ① -----

등록된 -----

다.

1. ~ 3. (생략)

②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등록-----
---.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

-- 등록을 희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고자 -----

등록하거나-----.

② ----- 등록 신청서-----

----- 등록증을 -----
---.

③ ----- 등록계약-----

-----.

④ -----

----- 등록-----

수 있다. <단서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3. (생략)

<신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

-----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등록을 한 -----

2.·3.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될 것 2.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3.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행사에는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에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신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것

4.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것. 다만, 할인행사에는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에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5.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할 것

6.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될 것

제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설>

<신 설>

① ~ ③ (생략)

제9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
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
는 경우 에는 판매대행점에 청
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9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제8조 제5
 항 _____.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

----- . 다만, 모
바일 상품권 및 카드형 상품권
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
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천만원을 -----

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추
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달에
는 6천만원까지 환전한도를 부
여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50퍼센트 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 5천만원으로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
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
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 및 카드
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
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예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일괄 변경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junjin020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054-650-6096)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종으로 하며,”를 “종이류, 모바일, 카드형으로 하고, 종이류의 경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를 “(판매대행점 등의 등록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받고자”를 “등록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를 “(판매대행점 등록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가맹점 지정 및 관리)”를 “(가맹점 등록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정받고자”를 “등록받고자”로, “지정 신청”을 “등록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된”을 “등록된”으로, “지정서를”을 “등록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제5항”을 “제7조제5호”로, “지정”을 “등록”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을 “(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정이”를 “등록이”로, “지정 신청”을 “등록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상품권의 종류) 예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 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 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 류를 3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 3만원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의 종류) ----- ----- ----- ----- ----- --- 종이류, 모바일, 카드형으 로 하고, 종이류의 경우 ---.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판 매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② ~ ④ (생략)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 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등록 및 관리) ① ----- ----- ----- 등록하고자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8조제4항 ----- ----- -----.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 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	제5조(판매대행점 등록 취소) --- ----- 제8조제 3항----- -----

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

-- 등록받고자 -----

----- 등록 신청-----

-----.

----- 등록 -----

-----.

② ----- 등록된 -----

----- 등록증 -----

-----.

③ --- 제7조제5호-----

----- 등록-----

-----.

제7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
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
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
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등록이 -----

-- 등록 신청-----.

[별지 제4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예천군이 발행하는 예천사랑상품권을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예천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변경·해지) ① 예천군에 있는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예천군수는 가맹점이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예천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예천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예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히행 및 업무협조) ① 예천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예천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예천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예천군

가맹점

상 호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주 소 :

대표자 : 예천군수 (인)

대표자 :

[별지 제6호 서식]

예천 - 호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 상 호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별지 제7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예천 - 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휴대폰 :)	
	주 소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예천 - 호)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상 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해지 사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별지 제9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예천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예천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예천군이 등록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예천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예천사랑상품권이 처음 발행된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예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원)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위와 같이 예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예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			
예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원)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illegible]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